

DB차이나증권투자신탁 제1호[주식] 규약변경대비표

(시행일:2020.6.10)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.</p>	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.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p>
<p>제14조(수익자명부)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~2(생략)</p> <p>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“수익자명부”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</p>	<p>제14조(수익자명부)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“전자등록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(중전과 동일)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~2(중전과 동일)</p> <p>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“수익자명부”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</p>

<p>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~⑧(생략)</p>	<p>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~⑧(중전과 동일)</p>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(생략) 2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<u>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</u>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-이상인 것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(중전과 동일) 2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,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(이하 “단기사채 등”)</u>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-이상인 것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
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③ (생략) <u>〈신설〉</u></p>	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③ (중전과 동일) <u>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9조와는 별도로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.</u> <u>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 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 <u>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 <u>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에서 인출한다</u> <u>1. 대상금액: 제39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(법률자문료 등)</u> <u>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. 단, 신탁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</u> <u>⑥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과는 별도로</u></p>

	<p><u>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제35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 ①~④(생략)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<u>예탁결제원</u>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	<p>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 ①~④(생략)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
<p>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~⑦(생략) ⑧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(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)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(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)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 3호(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)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. ⑨(생략)</p>	<p>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~⑦(중전과 동일) ⑧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(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)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(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)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 3호(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)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⑨(중전과 동일)</p>